

군산시 공고 제2016 - 707호

『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4월 11일

군 산 시 장

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『행정자치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(2014.6)』 요금적정화 목표제 기준으로 정기적인 요금 현실화율 추진
 - ▶ 군산시 현실화율 18.9%(전국 현실화율 38.3%, 전북 현실화율 27.2%)
- 2016년도 하수도사업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금인상 불가피.
- 2014년도 하수도사용료 30%인상 후 서민생활과 기업체 부담가중으로 2015년도는 사용료 동결하였으나, 현행 징수액만으로는 하수관거 정비·농촌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상추진에 재원

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

-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심의완료에 따른 조례안 개정('16. 03. 30)

2. 주요내용

- 하수도사용료를 27% 인상하되 매년 30%이내에서 사용료 인상하기로 함.(조례 제12조 2항)

3. 의견제출

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하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우573-703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)

군산시청 하수과(전화 454-5455, 팩스 454-5449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(☎454-545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조례 제 호

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12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양과 업종에 따라 [별표1] 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.

[별표 1] - 변경 전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(제12조 제2항 관련)

업종	오 수 량 (m ³ /월)	요 금 (원)	
		13년도	14년도
가정용	1-20	180	230
	21-30	250	320
	31이상	320	420
일반용	1-30	250	330
	31-50	360	470
	51-100	430	560
	101-500	570	750
	501이상	760	990
욕탕용	1m ³ 당	210	280
산업용	1m ³ 당	230	300

※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
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.

[별표 1] - 변경 후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(제12조 제2항 관련)

업종	오 수 량 (m ³ /월)	요 금 (원)
가정용	1-20	290
	21-30	410
	31이상	540
일반용	1-30	420
	31-50	600
	51-100	715
	101-500	960
	501이상	1,270
욕탕용	1m ³ 당	355
산업용	1m ³ 당	380

※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.

군산시 고시 제 2016 - 53호

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

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움아이유치원,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, 이른아침유치원, 하랑유치원의 통학로 구간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1. 목적

-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관련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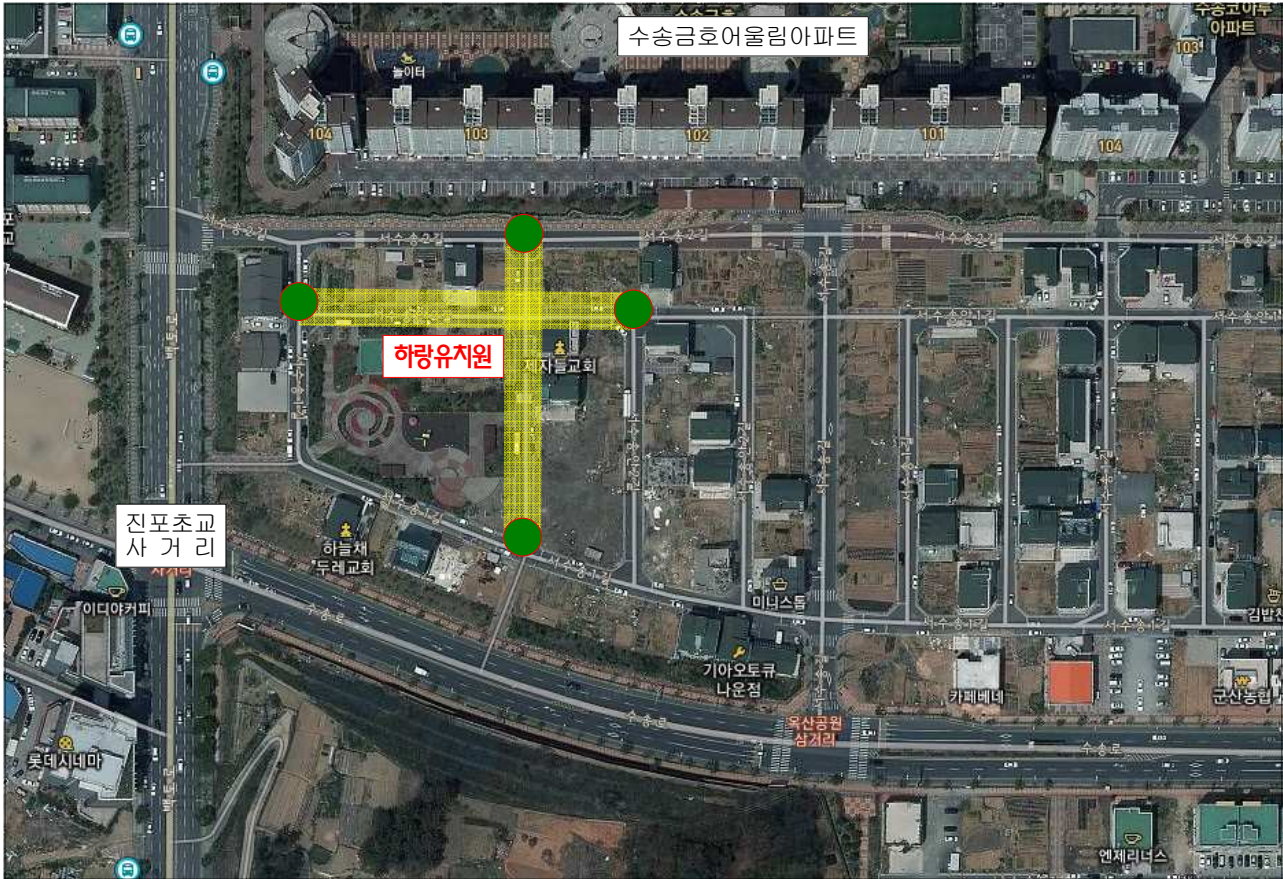
-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
-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

3.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

[세움아이유치원]



[하랑유치원]



※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교통행정과 (063-454-38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3. 14.

군 산 시 장

소하천의 점용·사용 허가 공고

군산시 공고 제2016-646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04월 일

군산시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(주)대우건설		
	대표자 (성명)	박영식	주소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7번지
소하천명		구 암 천		
공사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군산시 조촌동 471-2번지		
	면적	사용 2,992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2016. 4. 5 ~ 2017. 3. 8(338일)		
	목적 및 사유	토지점용 : 지하매설물 설치 (제거식 어스앵커 설치)		

열람서류

1. 사업계획서 및 도면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군산시 공고 제2016-699호

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 공사완료 공고

군산시 고시 제2014-43호(2014.04.25.)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“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사업”이 완료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군 산 시 장
2016년 4월 15일

1. 사업시행지 :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2-1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
 - 나. 명 칭 :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사업
3.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

시 설 명	위 치	시설결정	실시계획인가	공사완료	비고
연구시설	나포면 나포리 산21-18번지 일원	176,675㎡	99,664㎡	99,682㎡ (증 18㎡)	지적측량 결과반영

4. 사업시행자
 - 가. 사업시행자 주소 : 군산시 시청로 17 / 군산시 산단로 36
 - 나. 사업시행자 성명 : 군산시장(지역경제과) / (재)건설기계부품연구원
5. 사업기간 : 2014. 4. 25. ~ 2015. 6. 30.
6. 준공검사완료일 : 2016. 4. 8.
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전라북도 군산시 예규 제31호

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폐지예규를 다음과 같이
발령한다

2016년 4월 15일

군산시장 문 동 선



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폐지예규

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폐지이유 ◇

2007.12.17. 예규 제17호로 제정되어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나, 2009.4.15. 조례 제856호 『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가 제정되었고, 보건복지부 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지침’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내용 중복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◇ 주요내용 ◇

종전 ‘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’을 폐지하여 사업의 중복요소를 제거하고자 함

(전라북도 군산시 제공)